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5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용역과제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에 따른 해촉사유 개정

(안 제6조제3항)

나.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결과 공개(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8. 10. 4 ~ 10.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 할 것을 대비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조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에 따른 위원의 해촉사유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의2에서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면서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의2에서 조례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위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 또한, 안 제10조의2 「용역결과의 공개」를 신설한 것은 2017.10.1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참 고 자 료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6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교부) 제한 사유 정비

(안 제23조제4항)

○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 중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
규정 삭제

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8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31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은
 -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1조에서는 입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조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 제23조제4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교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나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항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1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나 자구 수정 등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9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개개인의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1)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1)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설치
- 2)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3)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안 제16조)

-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2)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공유 사업 등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업무의 위탁
(안 제17조 ~ 제19조)

아. 표창 및 부상 등(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취·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구의 일자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구인구직 등 취업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2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우수기관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기 제정되어 있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종합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

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